

## 16\_법적 조치가 가능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사례

### #1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영업비밀을 보호하더라도, 악의적인 누설이나 침해까지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2

#### ※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의 보호에 있어서는 아무리 철저한 조치를 취한다 해도, 여전히 침해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무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종종 대가가 수반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가 완성되며, 이는 영업비밀의 소유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및 전략적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적 조치들에 의해 규제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영업비밀 침해는 회사 내 직원에 의한 유출과 거래처가 비밀유지계약을 무시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 직원이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행위
- 경쟁회사가 직원을 유인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 경쟁회사가 다른 회사의 직원을 스카우트하여 이직시키고, 해당 직원이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사용하는 경우

### #4

#### ※ 거래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득을 위해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 경쟁업체가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유인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 행위

- 경쟁업체에 제공된 영업비밀을 처음에는 타인의 비밀임을 모르고 사용했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 #5

※ 직원의 부정취득과 거래처 등의 무단 사용 차이점

회사 직원과 협력 업체 모두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협력 업체의 경우, 원래 영업비밀을 가진 회사(갑 회사)로부터 합법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나중에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직원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절도하거나 기망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6

※ 부정취득 영업비밀 사후사용행위에 관한 규정

경쟁회사가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음에는 그것이 영업비밀인지 모르고 취득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나 기업에 처벌이나 책임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 #7

※ 취득 이후에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것이 다른 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임을 알게 된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회사는 불법행위를

인지하게 되며, 이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취득 영업비밀 사후사용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영업비밀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용을 지속한다면 영업비밀 침해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영업비밀 유출을 인지한 즉시,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8

살펴본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규정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또 이렇게 공개된 영업비밀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9

### ※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공개한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영업비밀침해 행위) 3. “영업비밀 침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실제로, 권한이 없는 자가 영업비밀을 몰래 취득하여 누설하는 경우보다, 실제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비밀을 취급하고 이를 허락 없이 누설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처, 즉 협력업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을 취급해야 하는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이 의무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10

### ※ 법원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 2020나2038875 판결

이 사건 도면 및 그에 화체된 이 사건 기술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 등에 따라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의무에 위반하여 (중략)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사용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데도, 피고 B에 이 사건 KTX승인도면을 제공하였는 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판결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강조되는 부분은 직원들과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입니다. 이때,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인지함으로써 보호를 강화하고, 향후 형사 조치 시 영업비밀 침해죄 적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는 협력 업체의 정보 유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협력 업체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을 어긴 경우, 해당 업체의 직원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11

### ※ 부정공개 영업비밀 부정 사용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영업비밀침해 행위) 3. "영업비밀 침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12

### ※ 법원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 2020나2038875 판결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피고 회사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기존의 디스크형 스택조립체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청받고, 영업비밀을 보유한 원고의 이 사건 기술을 이용한 모듈형 조립체에 대한 시험 과정까지 지켜봄으로써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의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 B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모듈형 IGBT 스택조립체를 납품받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 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에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한다.

## #13

### ※ 부정공개 영업비밀 사후관여행위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공개 영업비밀 사후관여행위'라는 규정을 통해 규제됩니다. 이 규정은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계속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인지하였다면,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14

###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판별과 조치 방법

영업비밀 침해의 핵심은 두 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첫째,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 둘째, 영업비밀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득한 경우 모두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받거나 사용하는 행위 역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금지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